

강릉원주대학교 - 한국국제협력단 간 해외봉사활동 학점인정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서

강릉원주대학교와 한국국제협력단(이하 “KOICA”라 한다)은 ‘해외봉사활동 학점인정’ 시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무협조약정(이하 “약정”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약정은 강릉원주대학교와 KOICA가 ‘해외봉사활동 학점인정’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 내용 및 범위) 양 기관은 다음 각호에 대해 관련 법령과 양 기관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력하며,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사항과 조건 등은 필요시 별도로 협의한다.

- ① 강릉원주대학교 재학생이 우리 정부의 협력국으로 지정된 개발도상국 현지에 파견되어 수행하는 봉사활동에 대한 학점 인정 제도 수립 및 개선
- ② 우리 정부 해외봉사단 사업(World Friends Korea) 모집 공고 등 강릉원주대학교 재학생의 해외봉사단 참여 제고를 위한 홍보
- ③ 해외봉사활동 실적에 대한 활동 정보 관리 및 관련 증빙 발급
- ④ 그 밖에 상호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3조(업무협의) 양 기관은 본 약정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 기관 중 일방의 제안에 의하여 업무협의를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서명날인자가 상호 업무협의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4조(경비사용) 본 약정에서 규정한 협력 내용 수행 시 발생하는 제경비의 지출 및 정산은 양 기관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.

제5조(비밀 및 보안유지) 양 기관은 상호 서면동의 없이는 본 약정과 관련한

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6조(시행 약정) 양 기관은 약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 기관이 합의한 업무 협력 내용의 상세한 범위, 방법, 절차 및 권리 의무 등 세부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시행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.

제7조(발효일 및 유효기간 등)

- ① 본 약정은 양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며 쌍방이 서명한 날부터 발효되고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.
- ② 본 약정의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양 기관 중 어느 일방으로부터 약정의 연장에 관한 서면 요청이 있을 시, 상호 협의로 약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상기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,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기관장의 서명(날인)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3년 11월 8일



강릉원주대학교 대외협력본부
본부장 박 세희

박 세희



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인재사업본부
본부장 정회진

정회진